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68
----------	-----

2024. 9. 11.(수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안지윤 의원 등 7인
- 나. 제출일자 : 2024년 8월 23일
- 다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6일
- 라. 상정일자 : 2024년 9월 4일
 -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- 마. 주요내용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안지윤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2023년 6월 23일 일부개정, 2023년 12월 21일 시행된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2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(안 제3조의2)
- 신설된 법 제5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(안 제3조의2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신복순)

-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3일 일부개정, 2023년 12월 21일 시행된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
- 주요 내용은 법 제2조의2에 신설된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자치단체의 책무를 반영하였으며(안 제3조제2항), 법 제5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임(안 제3조의2).
-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에서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3조(도지사의 책무)**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, 지역의 핵심문화시설로서의 지원·육성,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)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
2. 박물관 및 미술관 통계의 조사, 분석 및 보급
3.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 수집, 보존, 활용방안
4. 박물관 및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
5. 박물관 및 미술관 환경 및 서비스 개선

6. 박물관 및 미술관 상호교류 및 협력망 구축
7.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모니터링 및 지원사업의 평가방안
8.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제3항의 “제외할 수 있다”를 “제외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의 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”을 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의 “부서장”을 “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 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가치증대와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교육 및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하여 문화기반 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 및 육성하여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<신 설></p>	<p><u>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, 지역의 핵심문화시설로서의 지원·육성,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3조의2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)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</u> <u>2. 박물관 및 미술관 통계의 조사, 분석 및 보급</u>

3.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 수집, 보존, 활용방안

4. 박물관 및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

5. 박물관 및 미술관 환경 및 서비스 개선

6. 박물관 및 미술관 상호교류 및 협력망 구축

7.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모니터링 및 지원사업의 평가방안

8.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지원경비의 관리) ① ~ ② (생략)

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경비를 환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, 관련 법인·단체에 대하여는 환수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(생략)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
제5조(지원경비의 관리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경비를 환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, 관련 법인·단체에 대하여는 환수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 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
2.~4. (생략)

제9조(간사 등) ① (생략)

②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

2.~4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간사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(2023. 12. 21. 시행)

제2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,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·육성,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3. 6. 20.]

제5조의2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
2.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및 추진계획
3. 진흥 시책 및 추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
4.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의 현황과 전망
5.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
6.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3. 6. 20.]

제5조의3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
③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3. 6. 20.]

제5조의4(실태조사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,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3. 6. 20.]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 제1호

○ 사 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